

質 疑 要 旨	答 辯 要 旨
○ 적용대상 國家有功團體가 安山市에 있을 경우 社團인가, 小數團體인가?	人會 등 國家有功團體에서 앞으로 이러한 公益事業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條例를 制定함 ○ 法人團體이며 中央團體의 支會나 支部 性格이 될 것임.

5. 討論要旨

- 國家有功團體에 適用되는 稅制減免 條例이며,
- 地方稅法 規定에 依據 全國共通으로 準則案이 시달되어 制定하는 것으로서,
- 國家有功者에 대한 예우, 支援趣旨에 附合되는 條例로 타당함.

6. 審査結果

- 原案議決

安山市市稅條例改正條例案
審査報告書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

- 提出日字 : '92. 2. 7
- 提出者 : 安山市長

나. 回附日字 : '92. 2. 12

다. 上程日字 : 第10回 安山市議會(臨時會)第1次安山市市稅條例改正條例案 등 審査特別委員會議('92.2.13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總務局長 李奎承)

가. 提案理由

○ 地方稅法 改正('92.1.1)으로 인한 法規와 重複되는 條例規定 削除

○ 세율을 현실에 맞게 調整하고 기타 現行 條例上에 未備點 補完 改正

나. 主要骨子

○ 消防共同施設稅 削除(道稅로 轉換)

○ 稅率, 納期, 各種申告義務, 加算稅徵收 등의 條項을 法令에서 위임한 事項만 條例로 정하고 削除

○ 住民稅 등 法人균등할을 現行 15,000 원 50,000원에서 500,000원까지 調整

○ 事業所稅中 재산할의 標準稅率을 現行 3.3m²당 500원을 1m²당 250원으로 調整

○ 各種 申告義務 期間을 30일로 調整, 申告義務가 重複되는 경우에는 1回 申告로 같음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의 要旨

(檢討報告 : 專門委員 林鍾浩)

○ 本 改正條例는 地方稅法이 改正됨에 따라 구조제에 대한 전면 개정으로 주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세수증대를 도모하였으며, 주민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,

○ 京畿道 市·郡條例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서 시의 적절하며 他法令이나 규정에 抵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 疑 要 旨	答 辯 要 旨
○ 住民稅 法人균등 할이 現行 15,000 원에서 改正條例에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차 등 적용한다고	○ 法令에서 委任한 範圍의 최하한선이 5만원이므로 5만원이하는 내릴수 없음.

安山市議會事務機構의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
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

質疑要旨	答辯要旨
<p>하였는데 5만원이 하로 조정될 수는 없는지?</p> <p>○稅率을 地域與件 이나 재정자립도 등을 勘案하여 自 律制定할 수 있는 지?</p> <p>○住民稅 法人균등 할 適用을 5만원 이상 50만원까지 稅率을 適用하는 데 業體에 큰 負擔 을 주는게 아닌 지?</p>	<p>○條例準則에 依據 全國共通事項으로 制定하는 것임.</p> <p>○시관내 稅率을 5 만원으로 適用받 는 其他 法人이 93%이고 나머지 는 7%밖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思料 됨</p> <p>또한 이번 稅率上 向調整은 10년전 에 제정된것을 이 제 改正하는 것이 기 때문에 물가상 승등을 勘案하면 稅率이 절대 높은 것이 아님.</p>

5. 討論要旨

○本 改正條例는 地方稅法이 改正됨에 따라
全面改正하는 것으로

○住民의 負擔을 最少化 하는 範圍에서 現實
에 맞게 改正한 條例로 타당함.

6. 審査結果

○原案議決

1. 審査經過

가.提出日字 및 提出者

○提出日字 : '92. 2. 7

○提出者 : 安山市長

나. 回附日字 : '92. 2. 12

다. 上程日字 : 第10回 安山市議會(臨時會)
第1次 安山市市稅條例改正條例案등 審査特別委
員會議('92. 2. 13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總務局長 李奎承)

가. 提案理由

○地方自治法이 改正되어 관련條例를 改正

○議會事務機構 幹事名稱 變更과 職員1名

이 增員됨에 따라 職員定數 調整改正

나. 主要骨子

○議會事務機構를 議會事務課로 改正

(題名)

○幹事を 事務課長으로 改正(案 第2條)

○事務職員定數를 10名에서 11名으로 改正

(案 第3條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檢討報告 : 專門委員 林鍾浩)

○地方自治法이 改正됨에 따른 관련 條例 改
正事項으로 上位法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
으며, 當연 改正되어야할 사항임.

4. 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要旨

○上位법인 地方自治法이 改正됨에 따라 當
연히 改正하는 條例案으로서 改正이 타당하며

○改正內容에 異議가 없음

6. 審査結果

○原案議決